



한미 F T A 는 민 중 의 대 안 이 될 수 없 습 니 다 .

한미 F T A

10문 10답

한미 F T A 추 진 의 배 경 과 목 적

한미 F T A 가 미 칠 영 향 과 대 응 방 안



발간사

우리는 왜 한미FTA를 반대하는가?

4

한미 FTA 추진의 배경과 목적

1. 미국식 자유무역협정 모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8

2. 자유무역이 세계를 빈곤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요?

14

3.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왜 한미 FTA를 추진했을까요?

19

4. 미국 오바마 정부는 왜 한미 FTA를 다시 추진할까요?

24

한미 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 29 5. FTA를 통한 무역 및 금융의 자유화가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 34 6. 한미 FTA는 주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나요?
- 38 7. 한미 FTA 노동 조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한미 노동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42 8. 한미 FTA는 한국의 보건의료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47 9. 한EU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대응 방향

- 53 10.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록

- 59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한미FTA 독소조항들

우리는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국회 비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민중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11월 초 G20 정상회의에 한미 FTA 국회 비준 결과를 들고 가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애초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날치기로라도 올해 안에 한미 FTA를 비준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갈팡질팡하는 행태를 볼 때, 민중들의 투쟁이 확대되지 않는 한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따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 외에도 이미 44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한 상태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FTA 대상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을 'FTA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일수록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무역장벽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재벌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통상제도 선진화를 통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양국 간 협상에서 이익균형만 잘 맞추면 FTA는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폅니다. 농업 등 일부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므로 대책만 잘 마련하면 된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FTA의 핵심적 문제점을 감춥니다. FTA는 단순히 국가 간 통상전략이나 부

문간 이해득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시작해서 한미 FTA로 완성된 미국식 FTA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의 자유화와 서비스-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포괄합니다(질문1). 이에 따라 자본에게는 국경을 오가며 막대한 이윤을 누릴 자유가 보장되지만, 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과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굴레가 강요됩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자본도피와 국부유출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무역이 세계를 빈곤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FTA가 체결되면 수출경쟁력을 갖춘 재벌에게는 큰 이익이 되지만 경제 전체적인 성장과 고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질문2, 질문3). 따라서 FTA가 1997년 이후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현실적 근거가 없습니다(질문5).

한미 FTA는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특히 금융위기와 천안함 사태 이후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지배권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질문4). 또 한미 FTA에 포함된 각종 투자 자유화 조치들은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소조항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습니다(질문6).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권이 대폭 강화되고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조치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질문8).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한EU FTA도 한미 FTA 못지 않은 파괴적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질문9).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당면한 한미 FTA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상을 저

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FTA에 대한 민중적-국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별 FTA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질문10, 질문7).

이 소책자는 이상 10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지난 5월 발간된 초판에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또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부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각각의 질문 당 4-5쪽 분량으로 짧게 쓰려고 노력했고 사이사이 사진도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운동의 물결을 더욱 크게 일으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7일

사회진보연대

한미 FTA 추진의 배경과 목적

1. 미국식 자유무역협정 모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미 FTA를 둘러싼 관심사는 대부분 상품 무역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협상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방을 거듭하는 상황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양국이 무역장벽(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조절하여 슬기롭게 ‘이익균형’을 맞출 수만 있다면 한미 FTA는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가치이전을 고려한다면,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 제거가 협정 대상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미 FTA가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자유화’를 핵심적으로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또는 금융의 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자 자유화를 중심으로 미국식 FTA 모델이 어떻게 확립되어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미국식 투자협정의 진화1: ‘투자의 설립 전(前)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
과거에는 FTA가 체결국 간의 관세철폐라는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정의되었고 투자 문제는 FTA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문제는 투자협정이란 형식으로 별도로 다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투자협정은 ‘투자의 설립 후 단계’에서 투자자에 대한 비차별대우와 투자자산의 보호 문제를 다루는 ‘투자보장협정’이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나 현지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노동허가와 관련



된 제한 등을 제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전통에 중대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째는 투자 보장협정에 투자자유화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잠재적 투자가 능성까지도 권리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의 설립 전 단계'에 투자자에 대한 비차별대우와 투자자유화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 국가안보나 특정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 제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을 제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행의무 부과(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현지부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수출의무, 외환수지의무, 현지인 고용 및 교육훈련 의무 등) △외국인투자자의 토지 취득 제한 등을 제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미국에 모든 투자 기회를 완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것이 미국식 투자협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국식 투자협정의 진화2: 자유무역협정의 투자협정 포괄

두 번째는 자유무역협정에 투자협정 모델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1992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였습니다. 미국은 NAFTA에 투자보호에 관한 강력한 내용을 둡니다.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역사가 있는 멕시코에서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역인 초민족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나 자회사가 현지 국가에 의해 몰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미국 주도로 1995년부터 OECD 내에서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추진되는데 이는 NAFTA의 투자조항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시 결의된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UR 결과 WTO에서 도입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SCM) 등 국제투자에 관한 다자간협정 역시 시도해왔습니다. 선진국 수준에서는 OECD를 통해 높은 수준의 다자간투자협정을 확보

하는 한편, WTO를 통해서도 개도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국식 투자규범을 확산하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1998년 초민족적 자본에 맞선 민중들의 MAI 반대 투쟁이 전개되고 그 성과로 프랑스가 MAI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OECD 내에서 '투자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려던 시도는 좌초되었습니다. 또한 MAI를 원형으로 하는 WTO 내 각종 투자규범 역시 1999년 시애틀 전투와 2003년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의 민중들의 투쟁으로 인해 제동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양자간 FTA가 자신들이 원하는 투자규범을 확산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체결되어 있는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FTA에 포괄시키거나, 기체결된 BIT가 없는 경우에는 FTA 협상에 투자협정을 포함시켜 다루는 방식으로 '투자 자유화'의 내용이 FTA 협정문 내로 포괄됩니다. 미국 행정부는 2004년 11월 개정된 BIT 모델(2004 BIT 모델)을 발표하는데 이 모델은 이전 모델에 비해 BIT와 FTA 상의 투자협정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해소하는 한편 BIT가 외교적 성격이 아니라 각국에 강제되는 법규범적 성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개정된 2004년 모델은 NAFTA 등 미국의 FTA상의 투자협정과 내용 및 문구상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식 FTA 모델의 확립과 확산

이처럼 MAI와 2004 BIT 모델로 진화된 투자협정의 내용은 NAFTA를 원형으로 하여 미국식 FTA의 모델로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양자간투자협정을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해외투자의 진흥 및 보호 △상대방 국가에서 시장지향적인 국내정책 도입의 촉진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국제규범 개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타국들의 경우 일

반적으로 자국의 해외투자 보호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경우 이 협정을 통해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의 강화라는 목표까지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WTO 자체가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적 FTA 체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이는 미국식 FTA 모델이 확산되는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미국은 미국의 목표에 부응하는 국제규범에 맞추어 협상 상대국에게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FTA 체결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수출 및 투자 경로를 잃게 되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체결이 EU에게 자극이 되고, 한EU FTA 체결은 또다시 한미FTA 국회비준의 압박동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무역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이 포괄된 미국식 FTA 모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이상적이고 달성해야 할 ‘표준’이 되어 확산됩니다. 이는 한EU FTA가 ‘한미 FTA 플러스(KorUs Plus)’로 명명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투자자유화/무역자유화

한미 FTA 역시 미국식 자유무역협정 모델 하에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본이동과 투자의 자유화를 포괄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한미 FTA는 2004 BIT 모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004 BIT 모델은 투자 개념을 모든 자산(every asset)으로 규정하여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및 기타 파생상품 등 모든 투자를 자유화하며, 투자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진입규제나 제약 권한을 무력화합니다. 또한 언제라도 아무런 방해 없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은 FTA 선진국’이라는 선전문구는 사

실입니다. 미국과 EU라는 양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고,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많은 나라들과 체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초민족자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식 FTA 모델의 세계적 확산의 주구로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 자유무역이 세계를 빈곤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요?

자유무역이라는 교리는 확실히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자유무역을 억압하는 모든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리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의 자유화, 금융 메커니즘의 자유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극히 불평등한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의 원칙은 곧 대재앙을 낳았습니다. 19세기 식민지 분할이라는 세계사적 조건에서 자유무역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과 식민화, 수탈을 정당화하는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분할 경쟁이 붕괴한 후 구 식민지 국가가 형식적 독립을 쟁취했지만 과거 식민모국과 맺은 경제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했고 이는 주변부의 참담한 경제 현실을 다루는 종속적 저발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재건했던 자유무역의 원칙이 사실상 '자유기업'의 원칙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20세기 초반까지도 유럽, 미국, 남미의 일부 국가와 일본에서 국내시장은 여전히 자본축적과 소득증가의 원천으로서 중요성이 높았고, 공업화를 추진한 나라도 국제무역은 자원 곧 일차 기초재료의 수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이후 각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강력한 보호주의 장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대외무역은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자국의 실업을 '수출'하는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보



~~WTO~~

FREE
to exploit
people & nature
TRADE

호주의는 대불황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마셜플랜을 통한 유럽 재건의 대가로 미국의 기업이 유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유’, ‘투자의 자유’는 마셜플랜의 이면합의인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럽은 달러 부족 때문에 미국과 자유무역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불충분했습니다. 마셜플랜과 한국전쟁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건설과정에서 미국은 인위적으로 달러를 유럽에 제공했으나 여전히 유럽의 달러부족 사태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전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미국은 유럽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기업은 석유정제나 첨단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유럽진출을 가속화했고 유럽공동시장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유럽 기업을 인수 합병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 간에도 자회사의 설립, 제휴와 인수 합병이 증대하면서 유럽의 다국적기업도 확대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와 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경제기구가 구축되면서 이른바 ‘자유세계’ 내에서 국제무역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만, 그 핵심적 주체는 다국적기업이었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수준의 경제 변화의 핵심 주체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오늘날의 초민족기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유기업의 원칙이 강요되고 초민족자본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제국주의 자본에 의한 수탈의 통로는 직접적인 식민지배와 달리 더욱 교묘하거나 은폐된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직접·합작투자에 의한 이윤과 여기에 반드시 동반되는 국제 대부자본(오늘날의 초민족은행)에 대한 이자는 신식민지 국가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잉여가치의 착취를 의미했습니다. 둘째, 국가 간 생산수단의 수입과 상품의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교환은 잉여가치를 제국주의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분배했습니다. 셋째, 생산기술의 수입에

대한 대가로 기술지대가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다국적기업의 기술 특허료 신장률은 이자나 배당의 신장률을 상회했습니다. 넷째, 자본수입국이 초민족자본에 제공하는 조세나 규제 상의 다양한 특혜도 잉여가치가 재분배 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로가 결합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제국주의 자본이 주도하는 수탈메커니즘이 전후 반세기 동안 구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오늘날의 세계적 착취와 불평등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초민족기업이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본의 세계적 집중운동은 점점 더 강화되었고, 그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의 자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200대 다국적 그룹의 매출액 합계는 세계 모든 나라의 국내총생산 합계의 26.8%에 이르고, 100개 산업그룹의 내부 거래액은 전체 세계무역의 3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초민족적 산업그룹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는 내부 자금의 흐름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금융시장에 집중시켰습니다. 초기 단계 다국적기업에서 중앙집권적 재무관리는 1970년대 외환 위험과 금리 위험을 관리하는데 머물렀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점의 지주회사는 포괄적인 이윤 센터로서 기능하며(중종 금융기관을 직접 운영합니다) 금융화의 가장 능동적인 핵심 주체로 부상합니다.

또한 자유기업의 활동은 점점 더 세계경제의 3극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민족자본이 구축하는 해외직접투자, 기업 내 무역, 자회사의 수출, 국가 간 하청망은 북아메리카, 서유럽, 동아시아를 삼극체제로 하는 위계화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삼극체제 외부의 국가는 세계경제 시스템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자유기업이 구축하는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통합된 세계'라는 그들의 구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의 3극으로 통합된 지역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세계경제의 3극에서 나타나는 거의 공통된 특징은 금융적 규율을 강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식시장 부양이 절대 선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동자에

게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이 불가피한 선택이자 나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요합니다. 초민족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언제나 낮은 임금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초민족자본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잉여유출, 자본도피의 자유를 누리고, 결국 이는 주변부 경제위기의 일차적 원인이 됩니다.

3.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왜 한미 FTA를 추진했을까요?

한국의 전통적인 경제발전 전략은 ‘수출 주도 산업화’였습니다. 원화 가치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뒤 수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7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4%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1980년대까지 8%를 상회하던 경제성장률이 반토막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여전한데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국이 저임금을 활용하여 추격하자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게 됩니다. 또한 환율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금융자유화에 따라 초민족자본의 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평가절상 압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경제 전략을 혁신하는데, 그것이 바로 2005년 ‘선진통상국가구상’입니다. 이는 △혁신선도 업종의 성장 및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를 지니거나 성장잠재력 및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의 성장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특히 사업 서비스)를 골자로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이러한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FTA는 흔히 알려진 대로 단순히 재화의 원활한 거래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는 상품분야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괄합니



▲ 노무현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으로 계승된다.

▼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은 글로벌 FTA 총괄허브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선진통상 국가론 및 동북아 금융허브론의 연장선 상에 있다.



다. 이는 협상 상대국(선진국)의 기준이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사회 전반에 도입하여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FTA는 곧 세계화의 심화와 가속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한편 2007-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대외 충격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한국경제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결과 성장세가 장기추세선을 이탈합니다. 위기 시기 한국의 경제성장률 변동성은 OECD중 9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2009년 하반기 이후 비교적 빠르게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이는 상당 부분 대규모 재정투입에 기인합니다. 그 결과 재정적자 규모는 2008년 GDP 대비 1.5%에서 2009년 4.1%로 급증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사상최대의 무역흑자가 발생하자 수출이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재협상을 추진했던 것이지요. 이와 함께 정부는 한EU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조속히 한미 FTA를 비준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FTA 정책은 노무현 정부를 대체로 계승하면서도 체결 대상을 다면화하여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대 선진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자원부국(걸프 협력협의회(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등), 동북아국가, 대륙별 거점국가(터키, 러시아, 이스라엘 SACU(남아공, 보츠나와, 레소토, 나미비아, 스

와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FTA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를 '글로벌 FTA 총괄허브'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통상제도 선진화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유무역이 국민경제에 △소비자의 후생 증가 △자원의 재배분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 강화를 통한 효율성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6.0% 증가시키며 대미 무역흑자를 46억 달러 확대하고 약 3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공개 보고서인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2009.9)은 이전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 발효 15년 후 대미 무역수지가 71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부문의 수출 증대효과는 2007년 원안 타결 당시에도 크지 않았는데, 지난 연말 제협상으로 인해 그 효과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대미 무역흑자 증가효과가 한국 정부의 발표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FTA 경제성장 효과 예측이 각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대단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표] 한국의 FTA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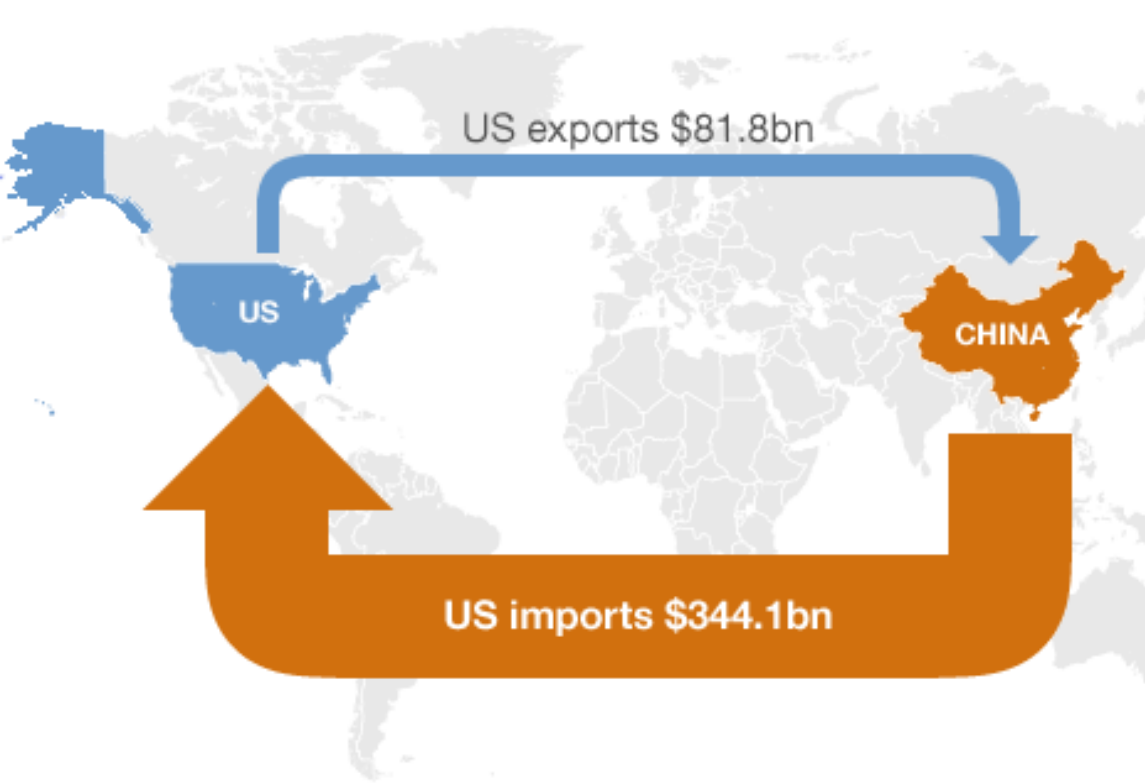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 현황
발효 (7건, 44개국)	칠레	2004. 4월 발효
	싱가포르	2006. 3월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6. 9월 발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2007.6월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9.5월 서비스협정 발효 2009.9월 투자협정 발효
	인도	2010. 1월 발효
	유럽연합(EU) 27개국	2011. 7월 잠정 발효
	페루	2011. 8월 발효
체결 (1건, 1개국)	미국	2011. 2.10.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2008. 3월 제13차 협상 개최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국	총 3차례 협상 개최
	멕시코	2008. 6월 제2차 협상 개최
	호주	총 5차례 협상 개최
	뉴질랜드	총 4차례 협상 개최
	콜롬비아	총 4차례 협상 개최
	터키	총 2차례 협상 개최
협상준비, 공동연구 (10건, 17개국)	일본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 중
	중국	2010. 9월 제1차 회의 개최
	한-중-일	2010. 1월 3국 간 준비회의 개최
	MERCOSUR 4개국	2009. 7월 공동협약체 설립
	이스라엘	공동연구 회의 3차례 개최
	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 개최
	몽골	2008. 10월 민간공동연구 협의
	중미 6개국	2010.10월 공동연구개시
	말레이시아	2011.5.1. 타당성 연구 개시
	인도네시아	공동연구 회의 개최

4. 미국 오바마 정부는 왜 한미 FTA를 다시 추진할까요?

지난 2007년 6월 30일 조인된 한미 FTA는 한동안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 중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에 합의한 직후부터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재협상이 타결되고 현재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오바마 정부는 왜 한미 FTA를 다시 추진했을까요? 여기에는 2007-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심각한 경기침체, 그리고 특히 미국 경제의 불균형 심화와 미중 갈등이라는 경제적·정치적 조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8년 0%, 2009년 -2.6%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3/4분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매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실업률이 장기간 10%를 기록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중적자,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중적자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일본·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미 무역흑자로 발생한 달러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해서 성장을 구가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수출 달러 환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메커니즘은, 미국이 달러라는 세계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그러나 중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미국의 국채와 금융상품에 다시 투자된다.

▼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에 진행되던 전략대화와 경제대화를 통합하고 참가자를 격상시킨 고위급 대화이다. 미국은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중국은 부총리와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참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메커니즘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중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최대의 무역흑자국인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중국의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반면 미국의 무역적자도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천안함 사건 등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략 및 경제 대화'(G2)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미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를 교두보로 삼아 사활적 이익이 걸린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지배권을 한층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다시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을 통해서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PP 협상은 현재 9개국(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와 FTA를 체결했고,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의 틀은 미국식 FTA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TPP 협상들 자체가 미국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올해 11월 자국의 하와이에서 열리는 APEC 회의 때까지 TPP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PP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참가할 경우에 TPP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TPP에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한편, TPP 참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일본은 자국 농수산업계의 반발과 대

지계진으로 인해 참가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개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한미 FTA와 TPP라는 점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과 동아시아 민중의 저항은 필수적입니다.

한미 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5. FTA를 통한 무역 및 금융의 자유화가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FTA를 통한 무역 및 금융의 자유화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일까요? 금융자유화와 수출 및 재벌 주도 성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FTA가 미칠 효과를 하나씩 살펴해보도록 하지요.

FTA와 금융자유화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져오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대부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증권투자입니다. 증권투자의 경우 성장유발효과가 극히 제한적인데 반해 변동성이 커서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큼니다. 직접투자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투자유발효과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최근들어 직접투자의 성격이 단기자금화되고 M&A형 유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장기적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률을 증가시키지 않을뿐더러 자본 이동의 불안정성으로 오히려 축적률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생산성이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축적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분배의 악화만 가져올 뿐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임금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성격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LONE STAR FUNDS



DALLAS



HAMILTON



LONDON



FRANKFURT



TAIPEI



SEOUL



TOKYO

▲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매각 과정에서 4조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겨간 것과 같은 금융 수탈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FTA 협상에서 투자 장벽으로 분류될 뿐이다. 한미 FTA는 원칙적으로 금융서비스 관련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방안에 많은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벌은 지주회사와 금융투자 확대를 통해 금융화를 촉진함으로써 초민족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의 하위파트너로 편입해왔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금융적 이익의 보장은 임금억제, 비정규직화, 외주 용역의 확산과 하청기업에 대한 도급 단가 삭감 등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의 강화를 대가로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집계 결과(2011.3)에 따르면, 2010년 10대 그룹 매출액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삼성전자로, 매출 112조 원, 영업이익 15조 원(전년대비 202%), 순이익 13조 원을 기록했다. 이 중 10조 원 이상이 반도체 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도 2010년 에 매출 96조 원(전년대비 25.1% 증가), 영업이익 8조 원(전년대비 45.3% 증가)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SK-LG그룹이 각각 매출액 95조 원과 94조 원을 기록하며 3, 4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투자 행태가 더욱 단기화되고 대외여건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 투자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의 불안정성 확대는 기초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국제수지 및 환율의 급변을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파생금융상품을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노무현 정부 하에서 제정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발효되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금융개방 기초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내 금융제도 및 규제체제를 재정비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FTA를 통해 계속해서 금융의 자유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한 금융자유화 정책이 향후 FTA 체제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새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단적으로 한미FTA는 원칙적으로 금융서비스 관련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방안에 많은 제약이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컨대, FTA를 통한 투자 자유화 확대는 한국경제의 성장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국부유출 및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금융세계화 기초를 유지·강화하는 FTA는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한층 높입니다.

FTA와 수출 및 재벌 중심 성장 전략

1997년 이후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따라 한국의 무역규모가 급증합니다. 무역 규모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국민총소득(GNI) 대비 수

출입 비율)도 심화됐습니다. 또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도 2000년대 들어 급증,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한국경제가 무역 및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주도한 산업은 무엇일까요? 1990년대 후반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선박자동차·IT 제품이 꾸준히 수출 상위 5대 품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 상위 5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1990년대 30%대에서 2000년대에는 40%대로 상승한 것을 볼 때, 주요 품목에 대한 의존도도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가 국제적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 위주로 재편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자동차·IT 등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재벌이 크게 성장한 반면, 여타 산업이나 중소기업은 성장이 지체됐습니다.

한편 1997년 이후 국내자본의 해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국내 이윤율의 하락에 따라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국외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1997년 이후 자본 이동 자유화 조치에 따라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자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자본축적률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생산의 확대에 의한 기업 내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가 빠르게 저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현지화는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대기업의 가격경쟁력과 매출액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거나 1, 2차 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로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산업 공동화를 낳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조달 확대는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반면 범용 부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1, 2차 내수 경쟁의 격화를 낳습니다. 또 교환율 정책은 완제품 수출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지만 원자재와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원가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로부터 수출 재벌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소득 및 고용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가 체결되면 생산기지의 국외 이전 유인이 더욱 커집니다. FTA에는 투자 자유화를 위해 투자자의 소유권을 대폭 보장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부문의 경우 국외 현지생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때 기존 한국 공장의 수출 물량은 미국 내 수요 증감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맞추어지기 때문에 생산 신축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 신축성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유인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요컨대,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수출 및 재벌 주도의 세계화를 가속화합니다. 수출 및 재벌과 국민경제의 괴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가 발효되면 한국경제의 성장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현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6. 한미 FTA는 주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나요?

대부분의 FTA에 포함되어 있고, 한미 FTA에도 포함되어 있는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접수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재산권의 직접적 박탈(국유화)을 의미한다면, ‘간접수용’은 국가의 어떤 조치로 인하여 그 재산의 사용이나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수용’은 미연방대법원의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면 수용”이라는 판결을 계기로 탄생한 ‘규제적 수용’이라는 개념을 미국이 투자협정 체결 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도입된 후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대부분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가 어떤 기업의 수익 창출을 막는다면 이는 ‘간접수용’에 해당됩니다. 한미 FTA에서는 이러한 ‘간접수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두어서 ‘간접수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초민족자본)가 투자국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의 내용이 한국 헌법의 내용을 넘어섭에도 불구하고 초민족자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즉 누구도 그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고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는 자들이 각 국가에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률이 초민족자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부 간 분쟁해결 절차뿐만 아니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였다는 것, 그 절차가 각 국가의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 공공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통해 FTA의 본질이 기업의 소유권의 절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TA 체제 하



▲ 미국의 초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미페루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렌코는 페루의 납 생산업체 도 런 페루(Doe Run Peru, 이하 DRP)의 최대주주이다. DRP는 페루에서 제련공장을 운영하면서 납, 카드뮴, 비소 등 독성 중금속을 다량 포함한 분진을 배출하였다. 이 물질들은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강을 오염시켰다. 결국 이 지역 아이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수준의 납중독에, 어른들은 폐병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환경오염도 크게 악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납중독은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몸에 미비 증세를 일으키며, 특히 어린이는 뇌에 손상을 입어 눈이 멀거나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 피해를 보다 못한 지역민들은 페루의 어린이 137명을 대표해 렌코사를 상대로 미국 미주리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렌코는 이에 반발하면서 ISD 조항을 이용해 페루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대신 물어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 FTA도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발효될 경우 한국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명박 산성

2008년 5월 31일 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경찰이 청와대로 향하는 집회참가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에서 자본의 권리는 투자국의 입법권, 본질적으로는 인민주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탈클래드 사(社)는 멕시코의 산루이 포토시 주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해당 지역을 자연보존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메탈클래드 사는 이를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여겨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NAFTA 제11장에 의거해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멕시코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해 간접수용으로 판결하였으며 1.6억 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재판정부는 해당 환경규제의 입안 동기가 공공의 복리였는지 고려할 필요 없이 멕시코 정부의 조치가 투자에 미친 영향만을 고려하였다고 명시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교부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멕시코 정부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멕시코 측 법률가들의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FIA가 투자자의 이익을 투자국의 공공복리보다 우선시하며, 투자국의 법적 자율성까지 침해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외국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행정까지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자-국가 소송과 투자국이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일들이 생기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그 존재만으로도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조치 및 공공정책에 대한 위축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캐나다 정부는 담뱃갑의 '순한 맛(mild)' 표기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NAFTA 11장에 의거한 소송을 언급하자 캐나다 정부는 이 규제안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또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 입법위원회는 오랜 숙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뉴브런즈윅 주 상황에 맞는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역시

NAFTA 11장을 언급하며 해소할 가능성을 암시하자 결국 뉴브런즈윅 주지사가 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4일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한국 의회가 추진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가 한EU FTA를 위반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FTA 체결 당시 유통업을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SSM 규제 강화는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이 합의 하에 추진하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500미터 내 SSM 진출을 규제한다는 것이고, 상생법은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중소기업청이나 지자체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치입니다.) 결국 11월에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일련의 과정은 FTA가 국가의 정당한 규제 및 국회 입법권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한EU FTA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집행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주고, 그 결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대한민국과 EU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입니다.

FTA는 기업의 자유 또는 투자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이 제일의 우선성을 가지며 어떤 권력과 법률도 투자자의 목표를 침해할 수 없도록 세계의 정치사회 질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은 자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에 의해 파괴됩니다. SSM 관련법 논란은 사소한 사례의 하나가 될 지도 모릅니다.

7. 한미 FTA 노동 조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한미 노동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한미FTA는 한국정부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에 노동조항이 포함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제시한 핵심 노동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지만 미국은 의회비준의 전제조건이라며 2007년에 수정안까지 제시하고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미국노총(AFL-CIO)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협정에 체결국의 노동환경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무역과 사회조항 연계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AFL-CIO는 한미FTA에 대해 노동환경조항이 여전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실패한 무역모델을 답습하고 있다며 지금도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FTA 노동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양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국제노동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둘째,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노동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열사 정신 계승하여, 한미FTA 저지하자!

2007년 4월 1일 한미FTA를 반대하며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인 허세욱 열사. 보름여 후인 4월 15일 끝내 동지들의 곁을 영원히 떠났다.



셋째, 국제노동기준이 반영된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노동권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 운영한다. 즉 공중의견제출제도, 정부 간 협의절차,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항들이 노동기준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국제노동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무가 곧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국내법령을 제개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위반이 분쟁대상이 되려면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대국이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기본노동권 법제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협약을 비준할 필요도 없고 국내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으며 분쟁과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즉 아무 것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한국정부는 ‘무역, 투자를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 금지 조항’에 대해 기본 노동권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노동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예를 들어 무급 주휴 인정)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향후 한국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기준을 악화시키는 데 한미 FTA 노동조항이 아무런 장애물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주장합니다.

셋째, 노동조항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의 경우, 과거 미국이 체결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강제력이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제약이 동반됩니다. 노동조항 분쟁해결절차의 결과로 노동자 복직, 체불임금 지급, 교섭명령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제소국 정부는 자국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면 상대방 정부에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일 뿐이지,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마저도 실행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쟁해결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므로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역이나 투자에 끼치는 영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노총은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조항이 노동권 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 그 자체가 구조조정 압력을 가하며 비정규직화와 사회양극화를 촉진하여 노동기본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권은 한미 FTA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즉각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화라는 조건에서 국제 노동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긴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 노동조항은 그러한 과제를 실현시키는 데 어떤 긍정적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8. 한미 FTA는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한미 FTA는 한국의 보건의료부문에 큰 변화를 주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초국적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 강화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품) 생산이 제한되면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민간의료보험회사를 규제할 수 없고, 개인질병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영리병원의 설립으로 의료비 증가, 의료양극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본래 역할은 신청된 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시판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제약회사가 시판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청이 이 사실을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회사(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특허기간 중 제네릭 의약품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은 그것을 통해 얻는 이익이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적 권리이므로 어느 의약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를 조사할 의무는 특허권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식약청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의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약회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회사를 상대로 승소율은 77.1%에 달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약리성분의 물질



▲ 초국적 제약회사 <화이자>는 전 세계적으로 강제력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무역제제가 가능한 무역협정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만들어졌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후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이용해 의약품 생산을 독점하면서 높은 약값을 고수하여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국적 제약회사는 미국 정치권에 엄청난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국회의원마다 로비스트를 붙이며 무역협상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제약 업계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부무역협상가들과 돌고 도는 관계를 가진다. 자유무역협정(FTA)은 TRIPS보다 더 강한 특허보호조항을 담고 있다. 초국적 제약회사는 이제 일일이 각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FTA 체결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



특허의 상당수가 근거 없이 발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이렇게 남발된 특허권을 식약청이 무조건 인정하고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일단 금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에서 특허약이 무효로 판명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동안 약값을 절약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약값은 건강보험과 환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되며 이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기대매출 손실액은 연간 367억~79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지연되는 기간은 9개월이 아니라 최소 30개월(미국의 평균 소송 기간)에서 최대 특허권 존속기간인 20년(특허권자가 묵인하는 경우, 미국은 28%)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실 규모는 위의 추정치를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 침해를 감시하거나 소송하지 않아도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자동으로 막히기 때문에 하나의 의약품을 약간 변형하여 새로운 특허를 계속 등재함으로써 특허가 늘 살아있게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에버그리닝 전략(evergreening strategy)을 통해 특허기간은 더욱 연장되고, 그만큼 의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의약품 독점을 더욱 연장하는 자료독점권

한미 FTA는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제출한 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인이 그 정보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최소한 5년간 시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독점권은 특허권과 별개로 초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 독점 생산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한국의 기존 제도와 비교해보면 이는

의약품 자료독점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동일의약품에서 유사 의약품에까지 확대하며, 식약청 고시에 불과했던 것을 협정문에 명시하여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의약품 자료독점에 의한 국내제약업체의 피해액은 연 2,54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의약품 가격 결정에 대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 강화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직접적으로 의약품 가격 결정과 관련한 조항을 통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허의약품 모두를 혁신적이라고 규정하여 모든 특허의약품에 높은 약값을 책정하고 △특허의약품 의료기기의 가격을 시장 가격에 기초하거나 초국적 제약회사가 원하는 급여액을 적절히 인정하며 △급여액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다시 더 높은 급여액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 시 초국적 제약회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중양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가격과 급여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초국적 제약회사에게 한국 정부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회사 규제 불가능, 개인질병정보 유출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될수록 국민건강보험 제정은 악화됩니다. 이것은 민간의료보험회사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하여 직접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 금융서비스장에서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불가능해짐으로써 민간의료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을 잠식하는 형태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건강보험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또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진 건강보험과 달

리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가진 민간의료보험회사가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30~60%(건강보험은 158%)로 매우 낮게 지급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가입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태를 규제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금융서비스 장의 부속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정보를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질병정보의 국내외 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를 심화하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서비스 허용
현재 한국에서 영리법인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 경영을 통해 얻은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주주들에게 많은 이윤을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환자로부터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 항목으로 두었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총 6개로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되어 의료비 증가와 의료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9. 한EU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강행통과되면서 지난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의한 강행통과를 승인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한EU FTA와 다르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좋은 FTA’와 ‘나쁜 FTA’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펴볼 것처럼 한EU FTA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금융세계화의 파괴적 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 대외 정책의 변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출범한 유럽연합(EU)은 1994년 7월 ‘아시아에 관한 신전략’을 발표하는데, 이는 중국을 비롯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요지로 하며, 이를 계기로 EU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나아가 1995년 EU는 한국 정부에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제안하는데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경제·정치에 있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대외 정책의 방침은 여전히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다자간 협정에 맞춰져 있어 FTA 추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EU에 FTA 협상을 제안하는데,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EU가 이를 거부한데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의제(WTO-DDA) 협상이



▲ 한EU FTA 장례식. 2007년 9월, 한EU FTA 협정 저지를 위한 벨기에 원정 투쟁.

▼ 2011년 5월 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민주당의 방조 속에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 되었다.



중단되면서 EU는 FTA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전환합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2006년 10월 4일 EU의 ‘글로벌 유럽: 세계에서 경쟁하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 중지되었던 FTA정책을 재개하며 △EU 수출과 투자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출 것, △원자재 투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 △제3세계 에너지 부문에서 무역을 증가시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EU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한층 강화할 것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할 것 △제3세계 국가들의 무역 방어 기제 적용을 제어할 것 △지리적 표시를 비롯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것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합니다.

EU의 ‘글로벌 유럽’ 전략은 대외적으로 제국주의적 전략을 노골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3세계로부터 자본수탈을 본격화하겠다는 공격적 대외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 EU의 ‘글로벌 유럽’ 전략은 대내적으로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U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위해 유럽을 보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세계화의 파괴적 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한EU FTA

EU는 이러한 정책 전환에 따라 한국, ASEAN, 인도 등 중요한 아시아 신흥시장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장잠재성 △EU가 한국의 최대투자국이자 2대 수출대상국이라는 점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FTA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점을 고려, 가장 먼저 한국과의 FTA 협상에 착수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상통하는 것이었고, 게다가

가 이명박 정부는 한EUFTA 체결이 한미FTA 비준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EUFTA 체결과 비준에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2010년 10월 6일 공식 체결되었으며, 구두합의에 불과한 잠정발효 문제, 번역 오류 문제 등을 덮어버린 채 지난 5월4일 국회에서 강행통과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발효된 한EUFTA 협정문은 한미 FTA만큼이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 한EU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

챕터	챕터의 명칭	주요 내용	
상 품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관세 철폐
	제3장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반덤핑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기술표준, 적합성 평가절차의 무역제한 효과 최소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동식물 위생보호· 무역에 대한 무역 제한 효과 최소화
서 비 스	제6장	관세 및 무역 원활화	물품의 통관 효율화
	제7장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자유화, 분야별 개방 약속
규 범	제8장	지급 및 자본 이동	자본 이동 자유화
	제9장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접근 확대
	제10장	지적재산	저작권 및 지적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의 보호 및 집행
	제11장	경쟁	보조금에 의한 경쟁 왜곡 방지
	제12장	투명성	국내법령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 저하 방지
기 타	제14장	분쟁해결	협정문 위반 여부 판정과 이행 절차
	제15장	제도· 일반 및 최종규정	무역위원회 등 이행기구 설치, 협정 개정 및 발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EU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초민족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정문은 △제조업 상품, 농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금융파생상품, 보험상품, 신금융 서비스 등 금융개방 △위성방송(전화, TV), 금융, 하수처리, 해운, 항공운송, 법률, 건설 등에 있어 추가적인 서비스 개방 △지적재산권의 전면적 강화(특허 의약품의 독점권 강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개방 수준에 대한 역진 방지 및 “계속적 자유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투자환경 등에 대한 재심(review) 허용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처럼 초민족자본의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한EU FTA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선전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한EU FTA는 국익을 지키고 싶어하는 양국 대표간의 치열한 외교전쟁이라는 환상을 유포하지만, 해당 국가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초민족적 자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익에 대한 손익계산이나 개별 부문의 손익계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전략과 한국의 전략이 공동으로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대응 방향

10.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FTA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정부의 FTA 네트워크 구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를 연내에 국회 비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G20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제1차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FTA를 더욱 확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위기일수록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무역 장벽을 걷어내야 국가간 장벽이 희미해진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대표도 최근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지요.

그동안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국민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한미 FTA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월 4일 남경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미 FTA 처리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날치기 처리를 공공연히 암시했습니다. 비준안이 외통위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때 국회의



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한마디로 갈팡질팡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을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투자자-국가채소(ISD) 조항만 빼주면 비준 동의 해주겠다는 타협안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차도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10월 31일 새벽에 만나 포기해버렸는데, 그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야합안이 부결되는 등 온갖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남경필 위원장이 외통위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민주당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걸으려는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적극적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당이 한미 FTA를 추진한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참여정부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 후 합동 군사 훈련 도중에 너무 서둘러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이익의 균형이 현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체결한 협정안은 별 문제가 없고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타결한 재협상안은 '굴욕적 퍼주기 협상'이라는 논리이지요. 그래서 민주당은 2007년 체결된 협정안에 대해서는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기존의 당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인 셈입니다.

사실 민주당의 속셈은 한미 FTA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한나라당에게 FTA 국회 비준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초 한EU FTA 국회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재협상 또는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 당론은 언제나 한미 FTA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없습니다.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미 FTA의 핵심 문제점은, 단지 투자자-국가 제소(ISD) 조항과 같은 일부 독소조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한국 간의 불평등 협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미 FTA는 세계 경제위기에 내몰린 초민족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협정이자, 그들의 입맛대로 한국 사회 전반을 구조조정 하려는 종합 정책인 것입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전선은 한국 재벌을 포함한 초민족 자본과 노동자 민중의 격돌, 즉 '국익'이 아니라 '계급'에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가 단순한 무역 통상 정책이 아니라 한미 관계 나아가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질서 재편의 중요한 계기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한미 FTA는 미국의 대외 통상 전략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은 한미 FTA를 발판으로 삼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FTA를 전면화하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이러한 미국의 FTA 전략과 동북아 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방미 이후, “한미 FTA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한미동맹은 이제 정치-안보동맹에 경제동맹이 더해진 다원적-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한미 FTA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중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10월 28일 국회 진격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한미 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뒤이은 11

월 3일 범국민대회에서는 대규모 대중투쟁을 펼쳐 국회를 압박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가올 노동자대회와 범국민대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 의사일정이나 몇몇 기술적인 협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끈기 있고 줄기차게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여가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모든 민중들이 힘을 합쳐 한미 FTA에 대한 교육, 토론, 선전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 FTA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해야 합니다. 혹여 한미 FTA가 날치기 통과되더라도 이번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미 FTA를 통과시킨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은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와 반민중적 효과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준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롭고 지난한 싸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비준안 통과 이후 곳곳의 현장에서 각개격파 당하기 전에 지금 함께 뭉쳐 싸워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운동은 FTA에 대한 민중적, 국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한미 FTA를 막아내는 것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겠지만,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별 FTA마다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삶에 기반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무역이나 통상과 관련한 대안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들 사이의 국제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역에서 '불평등교환'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외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국가 간 기술력-생산력 격차에 따라 부등가교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결국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

려고 합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출혈적인 저임금 경쟁, 즉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역에서 부등가교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낮은 국가의 임금 상승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동해야 합니다. 저임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노동기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자본의 세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국제연대가 우리의 장기적 대안입니다.

부록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한미FTA 독소조항들

1.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는 강력한 독소조항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¹⁾

이 조항과 관련된 국회 끝장토론에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조항이 투자유치를 위한 조항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약을 만든다는 것은 공동선을 위해 주권 중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권포기 발언을 했다.

2. 간접수용

한미FTA에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없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간단

1) 오바마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ISD는 그 자체로 주권침해 조항인데다가, 일방적으로 불평등하기까지 하다.

히 말해 간접수용이란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직접수용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정부 규제, 정책에 의해 투자자의 자산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정부가 자신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소유권 절대’ 제도가 있을 수 없다. ISD제도와 이 간접수용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더 이상 땅값, 주식 값을 떨어뜨릴 만한 공공정책들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판이다.

3. 역진 방지 조항

역진방지조항(래킷²⁾조항)은 한번 개방-개혁된 사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이 역시 정부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앞으로 한미FTA로 인한 각종 폐해들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사사건건 발목 잡히게 될 조항이기도 하다.

4. 금융시장 완전개방의 재확인

한미FTA는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자유화를 실현한다. 또한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등재하는 포괄주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들은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물론 이미 한국의 금융자유화 정도는 더 개방할 것이 남지않은 정도로 높

2) 래킷은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지 않게 하는 역진방지 장치의 명칭이다.

다. 다만 한미FTA는 세계금융시장이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추가적인 대응조치 완전히 봉쇄하는 독소조항을 추가한다.

5. 허가-특허 연계조항

국내 제약업계 대다수는 오리지널약이 특허 만료된 뒤 나오는 복제약을 생산한다. 그런데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란 복제약을 만들어 식약청에 시판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소송을 제기, 복제약의 시판을 늦춤으로써 사실상 특허연장의 실익을 누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의약품 소비자는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의약품에 한해,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약값이 인상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이 조항은 미-파나마, 콜롬비아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삭제된바 있다. EU에서도 이 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0년 12월 재협상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6.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인터넷 사이트 폐쇄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또한 한미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

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7. 세이프 가드 조치 금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 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 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있을까? 없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한할 수도 없다. 예컨대 KT의 대주주는 미국계 사모펀드다. 이 펀드는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다. 매년 수 천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다.

8. 비(非)위반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 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공기업 완전 사유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 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

10. 대책 없는 농업포기정책

정부가 대놓고 인정하는 한미 FTA 피해 분야가 농업이다. FTA체결 이후 눈에 보이는 대략적인 피해만 10여 년간 12조 이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대책은 '농어민 폐업 지원 제도'다. 사람을 살려 달랬더니 장레지원정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꼴이다. 기후변화, 세계경제위기로 국제 식량위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농업 포기정책은 단순히 농업피해액수 12조 원을 다른 곳에서 벌충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카길(Cargil) 같은 초민족적 농업자본은 어느 나라의 국가의 정부들보다 해당 국가에 식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식량 공급가격을 차별화하여 공급한다.

그 외 한미FTA는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³⁾>, <스냅백 조항⁴⁾> 등과 같은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3) 미래의 다른 나라와 다른 조약을 맺을 때, 미국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품목을 개방하면, 자동으로 미국에 계도 개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4) 스냅백 조항은 한국정부가 자랑했던 자동차 수출관세 인하를 미국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한국이 자동차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자동차 수입관세를 되살린다. 협정의무 위반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한미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고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우리 사회운동의 길을 밝히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겠습니다.

월간 사회운동 홈페이지
<http://www.movements.or.kr>

「사회진보연대」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를 반대하고,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민중의 노동권·여성권을 쟁취하고, 민중의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지부에서 여성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반전팀과
빈곤팀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의 쇄신과 확장을 꾀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이론·정책 활동, 시민교육,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연대운동을 펼쳐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http://www.pssp.org>

값 2,000원